

2009. 7. 20. (수)

제16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자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목 차】

1.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4.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5.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6. 10.
- 나. 발 의 자 : 강창남 의원 외 1명
- 다. 회부일자 : 2009. 06.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7. 15
- 다. 의안번호 : 제2009 - 30호

2. 제안이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 모집 등 군수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노인일자리사업의 위·수탁에 대한 협약, 의무,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제9조).
- 바. 공익형 및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등 지원대상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재해·사망 등에 대비한 참여자의 보험가입 규정을 명시함(안 제14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고령화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과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6. 30.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7.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7. 15
- 다. 의안번호 : 제2009 - 24호

2. 제안이유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08.12.31)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신설).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 마련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함(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하며,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면 분할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평정하고, 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가능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의3, 제13조, 제14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2008. 12.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과 기밀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소집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에 따른 휴직의 경우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음.
- 상기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9. 06. 10.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1명
- 다. 회부일자 : 2009. 06.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7. 15
- 다. 의안번호 : 제2009 - 29호

2. 제안이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계획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거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통보되었음.
- 그러나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상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6.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7.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7. 15
- 다. 의안번호 : 제2009 - 28호

2.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 과태료의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군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면서 과태료의 부과권과 부과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음.

- 따라서, 군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금액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2008.12.31 대통령령 제21228호, 2009.4.1 시행)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시행령 제33조, 별표 5)되었고,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2007.12.21 법률 제8725호, 2008.6.22시행)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집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4.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조례안은 2008. 12. 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음.

- 따라서 군수가 별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집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9. 05. 15.
- 나. 발 의 자 : 안철우 의원 외 1명
- 다. 회부일자 : 2009. 05. 1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7. 15
- 다. 의안번호 : 제2009 - 22호

2. 제안이유

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금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군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책 읽는 공원」 및 「읍민 생활 공원」을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청정공원 안에서 금연·금주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흡연·음주행위의 계도와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책 읽는 공원」과 「읍민 생활 공원」을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이 없고 권장구역의 지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연·금주청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